

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4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2. 29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,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규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,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」 제11조(위탁운영), 제12조(위탁기간)

나. 위탁의 필요성

-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
-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경험이 많은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위탁 운영 필요

다. 위탁 대상시설 현황 및 위탁기간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정원	종사자	위탁기간
뜰 에 어린이집	종가로 730 에일린의뜰2차아파트	191㎡ (지상1층)	40명	11명	2024. 9. 1. ~ 2029. 8. 31.

라. 위탁사무의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반
- 그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수탁자 선정방법

- 공개모집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

3. 추진일정

-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: 4~5월
-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·선정 : 6월
 - ※ 공고기간 내 수탁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부적격 처리 되었을 경우 위탁 절차에 따라 재공고 후 선정
- 국공립어린이집 위·수탁 계약 체결 : 8월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
-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현황

붙임1 근거법규

□ 영유아보육법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2. 삭제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회(이하 "수탁자선정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8의2]
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.
- 나.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,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.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- 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□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

제11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.

③ 제1항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
1.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
2.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3.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
4.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

④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결정해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고 위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

제12조(위탁기간)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붙임2 뜰에어린이집 현황

□ 시설개요

- 소재지: 종가로 730, 에일린의뜰2차아파트(장현동)
- 시설규모: 연면적 191㎡, 지상 1층
- 주요시설: 보육실, 조리실, 교사실, 원장실, 유희실

□ 세부내용

- 종사자: 원장 1명, 담임교사 7명, 조리사 1명 ※ 그 외 보조(연장)교사 2명
- 운영시간: 주 6일 이상, 연중 계속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*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
 - *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제외
- 보육시간
 - 기본보육: 09:00~16:00(7시간)
 - 연장보육: 16:00~19:30
- 인건비 지원: 원장 80%, 영아반 교사 80%, 유아반 교사 30%, 조리사 100%

□ 향후계획

- 2024. 6. : 중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선정
- 2024. 8. : 위·수탁 계약 체결
- 2024. 9. 1. : 어린이집 운영